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관서

(판매기업용)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 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본인의 판매대금 추심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관을 함에 있어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① “기업구매자금어음”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한 판매기업이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말합니다.
- ② “인수”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지급할 것을 구매기업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인수거절”이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지급을 구매기업이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결제기준일”이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구매기업은 이날까지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거나 자기자금으로 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⑤ “MarketPlace(이하 “MP”라 합니다)” 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는 사업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
- ⑥ “구매자금결제제도”라 함은 판매기업은 구매기업 앞으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하고 구매기업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인수 및 자금결제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⑦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구매기업중심)”이라 함은 구매기업의 구매내역 결제의뢰 시 은행이 판매기업의 추심행위를 대행하여 추심등록하고 구매기업이 인수 및 대출신청한 것으로 보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⑧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라 함은 판매기업이 추심의뢰후 구매기업을 대리하여 인수 및 구매기업명의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⑨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판매대금의 추심행위가 MP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금결제제도를 말하며, 매매계약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인수 및 구매기업명의 대출이 실행되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자동승인방식”과 구매기업의 인수 및 대출실행후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승인방식” 및 “접수방식”이 있으며,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에 승인방식을 지정하여 MP 가 은행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⑩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MP 에서 체결한 거래품목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정보와 결제수단, 결제예정금액, 만기일, 지급승인방식 등의 대금결제정보가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말하며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겸합니다.
- ⑪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기업인터넷뱅킹, CMS 서비스, FirmBanking 등 전자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제 2 조 (이용시간)

- ① 은행은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 (추심관련 서류의 제출)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하기로 합니다.

- ① 제출서류
 - 1. 기업구매자금어음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2. 세금계산서 원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추심의뢰 하여야 함)
 - 3. 기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 ②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환어음을 제외합니다)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1.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구매기업중심) :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근거로 구매기업이 구매내역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은행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본인을 대행하여 동 내역대로 전자적으로 추심의뢰서 작성 및 추심등록 처리하기로 합니다.**
 - 2. B2B 구매자금결제제도: 본인이 MP 에서 구매기업과 체결한 전자상거래매매계약을 MP 를 통해 은행이 전송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추심의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수수료 등)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하거나 B2B 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시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상에 수수료 부담주체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은행은 수수료 징구방법 및 대상, 시기,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통지)

- ① 은행은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구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나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추심의뢰내역을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으로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은 구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인수거절, 부도, 미결제등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하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담당자정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유선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판매대금 입금계좌 지정)

- ① 본 약정에 의한 판매대금 입금계좌는 다음계좌로 지정하기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 ② 전항의 입금계좌는 은행내에 개설된 본인명의로 계좌에 한하여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약정의 해지 등)

가공의 매출, 추심의뢰내역 또는 세금계산서자료의 허위·오류제출 등의 사유로 지속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약정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8 조 (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MP 및 구매기업에게 다음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MP 에게는 판매기업에 대한 기업명(또는 상호명)정보, 약정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2. 구매기업에게는 판매기업에 대한 기업명(또는 상호명) 정보, 약정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 5 조에 의해 통지한 추심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2. 제 5 조에 의해 지급거절내역을 통지하였으나 본인의 확인지연,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통화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3. 판매대금 입금계좌의 거래정지, 계좌이상 등의 사유로 입금불능이나 입금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4. 역구매자금결제제도(판매기업중심)를 이용하는 경우에 구매기업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심의뢰 또는 대출실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0 조 (효력)

본 약정과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제 11 조 (관할법원의 합의)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본인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2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 _____ (인)
주 소 :